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4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정재 · 박덕흠 · 안철수
김대식 · 이달희 · 최은석
박충권 · 최수진 · 강명구
서천호 · 서명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절차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나,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정화노력만으로는 참정권 보장과 국민적 불신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의 근거를 명시하고 개방형직위로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하여 관련 감찰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업무를 전담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두고,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되, 감찰을 함에 있어 진행 중인 투·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 다. 감찰과 관련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42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을 “결산검사보고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으로 본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위는”을 “직위 및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의 직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은”을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간부와 당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감사본부장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 가입 기간 중 대표자, 간부 또는 당직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표자, 간부 또는 당직자의 직에서 사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사항을 감찰할 때에는 진행 중인 투·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와 그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제42조의 제목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를 “(감사 결과 등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항”을 “사항(제2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필요한”을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② 감사원은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찰의 결과 및 그와 관련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p> <p>1. ~ 8. (생략)</p> <p>9. 제41조에 따른 <u>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u> 보고에 관한 사항</p> <p>10. ~ 16. (생략)</p> <p>② (생략)</p> <p>제16조(직무 및 조직) ①·② (생략)</p> <p><u><신 설></u></p> <p>③·④ (생략)</p>	<p>제12조(의결사항) ①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결산검사보고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u>----- -----</p> <p>10. ~ 1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직무 및 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u> <u>이 경우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으로 본다.</u></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 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1. 2. (생략)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① -----

직위 및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의 직위는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감사본부장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되어서는 아니된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신 설>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
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 가입 기간 중 대표자,
간부 또는 당직자의 직에 있
었던 사람으로서 대표자, 간
부 또는 당직자의 직에서 사
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사람

<신 설>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
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선
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④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
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
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

-----사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간부와 당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
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의 구체적인 범위는 ----.

제24조(감찰 사항) ① -----

--. 이 경우 제5호의 사항을
감찰할 때에는 진행 중인 투·
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
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와
그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감사 결과 등 보고) ① -

--사항(제2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한다)-----.

-----.

② 감사원은 제2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감찰의 결과 및 그와
관련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선
거관리위원회가 두 번 이상 독
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공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관리의 공정
성과 중립성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또는 제2항-----관하여 필요한 -----.